

해방 후 조선 화교들의 북한 사회 정착 과정

박영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정치학 전공

athena0901@hanmail.net

- I. 머리말
 - II. 화교들의 조선 정착 및 이들의 국적 문제
 - III. 해방 후 북한의 정권 수립과 북조선화교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
 - IV. 북한 국가 수립과정에서의 화교들의 현지화
 - V. 맺음말
-

I. 머리말

화교는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거주하며 그들의 경쟁력은 막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전 총리 리관유(李光耀) 역시 화교출신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화교들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북한 화교들이 중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거절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이들은 북한에 살고 있지만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 국민인데도 은행 개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논문은 한반도 북쪽 지역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해방 직후 어떤 지위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내에 소개된 북한 화교 연구 성과는 소수이다. 북한에서 출생한 화교 출신 송우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화교커뮤니티의 변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집단화 정책이 추진되던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화교들의 직업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는 북한 주재 중국영사관이 작성한 영사관보고서, 북한 화교의 대규모 귀국 시 중국 기관이 만든 당안(檔案), 귀국자를 포함한 북한 화교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북한에서 화교를 대상으로 발간한 중국어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는 해방 직후 한국전쟁 정전시기까지 일부 화교들이 귀국하기도 하고, 월남을 했지만 북한에 남아있던 화교들은 종전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에서 진행된 산업집단화 과정과 1958년 북한의 농업집단화 과정에도 북한 거주 화교들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북한 화교의 직업 선택도 북한 주민들과 같이 국가통제에 의해 관리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¹ 쟈르치스스키 표도르(이휘성)는

1 송우창, 「북한의 산업집단화와 북한화교(1954-1966)」, 송승석·이정희 편저, 『동

북한 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 연구하면서 북한의 공식자료, 중국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했고, 인터뷰 진행 그리고 북한 화교 포럼인 cxhq.info를 활용했다. 그는 화교들의 사회적 지위가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으며, 화교들의 지위변경의 결정적인 기준은 '부'였다고 결론을 내렸다.² 또한 그는 「북한 화교 교육 제도의 역사」라는 논문에서 '중국인학교'와 북한의 일반학교, 중국학교, 그리고 소련의 소수민족학교를 비교하였다. 그는 북한 화교교육제도를 시기별로 나누어 1963년까지는 독립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1963년 이후 북한의 학교들에 동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³ 이승엽은 1980년대 이후 북한 화교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이 북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 화교가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정보제공자로서 화교들 내에서 새로운 사회관계의 형성을 추동하며, 교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⁴ 이옥련은 구술자료에 중심을 두고 연변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 간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연변지역으로 귀국한 북한 화교들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귀국화교들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조 외교, 중조 변방무역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⁵

국의 연구는 주로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무덕정(慕德政)은 북한 화교의

남아화교와 동북아화교 마주보기』(학고당, 2015).

- 2 켈르치즈스키 표도르(이회성), 「북한(華僑)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 3 Tertitskiy Fyodor, 「북한 화교 교육제도의 역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3(2007).
- 4 이승엽,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화교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통일·평화의 상상력』(북한연구학회 정치 추계 학술회의, 2012).
- 5 이옥련, 「연변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30, 2013.

교육문제를 연구했으며,⁶ 손옥매(孙玉梅)는 한국전쟁 중 북한 화교의 성과를,⁷ 왕해룡(王海龙)은 북한에서 화교들의 사회적 변화모습을,⁸ 주혜령(朱慧玲)은 북한에서 화교들의 경제와 사회생활 등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였다.⁹ 그 외에 크라우스(Charles Kraus)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북한 화교사회의 모습과 화교 교육에 대해 연구했다.¹⁰ 국내와 국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이후까지 광범위한 시기가 연구되었고, 이 연구 성과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 화교의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중국 국무원에서 1984년 공포한 「화교, 귀국화교, 화교학생, 귀국화교학생, 화교가족 등 신분에 대한 해석」 규정에 따르면 화교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으로 1911년 신해혁명 이후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¹¹ 따라서 한반도 해방 당시 북한에 거주하던 중국인들도 화교라는 명칭으로 지칭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 시기는 해방 후부터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다음해인 1949년까지이다. 당시는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들의 전성기로 그들은 북한 체제 수립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각 지역에 정착하는 집단의 현지화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변화에 적응하여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가 해방된 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다른 성격의 체제가 수립되고 북한에서도 새로운 국가 및 경제 체제 수립과정에서 화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과정에 적응하여 생활하고 정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6 慕德政, 「朝鲜华侨教育的历史回顾」, 『华侨华人历史研究』, 2001年 12月 第4期.

7 孙玉梅, 「朝鲜华侨在抗美援朝战争中的贡献」, 『社会科学战线』, 1992年 1期.

8 王海龙, 「朝鲜华侨的社会变迁」, 『世界知识』, 2012年 7期.

9 朱慧玲, 「东北亚华侨社会的现状及其未来」, 『华侨华人历史研究』, 1997年 1期.

10 Charles Kraus, “Bridging East Asia’s Revolutions: The Overseas Chinese in North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1, No 2(2014).

11 김동하,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마인드랩, 2017), 1쪽.

논문의 목적이다.

이 시기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는 실제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중앙정권기관이었고, 중국은 내전 중이었으므로 북한과 교섭한 주체는 중국공산당이였다. 따라서 양측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으로 논의하는 동맹이론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의 시작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인 1949년 10월 4일 북한에서 외교관계를 체결하자는 각서에 대한 답신으로 10월 6일 중국 외교부장 주은래(周恩來)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발표였다. 그리고 1949년 12월 25일 북한, 중국 양국 간의 우편물, 전화, 전보 교환에 관한 각 부문 협정이 체결되었다.¹² 북한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체결한 협정은 1961년 7월 11일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해방 후 북한 정부와 화교들의 관계를 연결해 주던 매개체는 북조선화교연합회였고, 이 단체는 북한의 사회 및 경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화교들도 북한의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존 연구들 중에도 북조선화교연합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연구도 있지만(Charles Kraus), 당시 북조선화교연합회 명의로 김일성과 각 사회단체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협조를 제안했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없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화교들의 조선 정착과 이들의 국적 문제를 확인하였고, III장에서는 해방 후 북한의 정권수립과 북조선화

12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선인, 2012), 36-37쪽.

교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을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북한의 국가 수립과정 중 화교들의 경제 및 교육 분야 현지화 과정을 검토하였다. 주요 활용자료는 기존 연구 및 북한의 1차 자료 그리고 북조선화교연합총회에서 김일성 및 각 단체에 보낸 공문인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¹³와 RG 242 중 북조선화교연합회의 북한 교육에 대한 부분인 NARA, RG 242, Korean-Language Publications and Records Captured in Pyongyang, Box. 12. 등을 이용하였다.

II. 화교들의 조선 정착 및 이들의 국적 문제

근대 시기 조선에 화교가 정착하게 된 배경은 1882년 10월 청국과 조선 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 그 시작이었다. 이 규정으로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군대가 한성에 주둔하면서 당시 상해에 있던 광둥인(廣東人)들이 한성과 인천 지역으로 이동해 상업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을 기점으로 일본은 조선에 사회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노동력을 화교노동자들로 대체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일본 입국이 제한되었지만 이 정책이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화농(華農)이나 화공(華工)은 조선의 북쪽에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야채재배가 가능한 산간지역 등의 유희농지가 많았고, 대형 플랜트 건설 가능지역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⁴ 북쪽 지역에 정착한 화교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동

1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14 송우창, 「북한의 산업집단화와 북한화교(1954-1966)」, 송승석·이정희 편저, 『동

성(山東省) 출신들이 많았고, 1933년 기준으로 북쪽 지역에서는 평안북도에 가장 많은 화교가 정착했다.¹⁵

북한에 정착한 화교의 숫자는 1883년 당시 162명, 1945년에는 62,238명이었다.¹⁶ 해방 전후 북한 화교들이 종사한 업종은 주로 면포와 비단업, 농업, 음식업, 잡화점, 이발, 가마공장, 토목건축과 광산 개척 등이었다.¹⁷

한반도가 해방되기 전 북쪽지역 화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1937년 북만주 지역의 새로운 정권 수립에 대해 경성 총영사 범한생(范漢生)이 지지성명을 발표하자 남북조선에 재류하는 화교들은 이를 환영하였고, 1월 3일 황해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4천여 명은 지나인민회연합회(支那人民會聯合會)를 해주에서 조직하고 신정부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며 일본, 중국, 만주와의 공고한 제휴를 강조함과 동시에 공산주의 반대를 결의하였다.¹⁸ 실제로 한반도가 해방되기 직전까지 북쪽 지역에 있던 화교들은 당시 반공을 주장했던 중화민국을 모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에서는 해외 화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중국의 화교에 대한 정책과 국적법(國籍法)을 통해서 살펴보자. 중국에서는 청나라 시기였던 1909년에 처음으로 국적법이 공포되었고 이후 1912년에 개정되었다. 1912년 당시 손문(孫文)의 남경(南京) 임시정부는 화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동년 교무(僑務, 해외 교민에 관한 사무)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되었을 때 이 정책의 수립 목적은 정치적으로는 화교의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경제적으로는 화교자본의 유인을 규정하

남아화교와 동북아화교 마주보기』(학고당, 2015), 206-208쪽.

15 楊昭全·孫玉梅 著, 『朝鮮華僑史』(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p. 258.

16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稻鄉出版社, 2007), pp. 21-22.

17 이옥련, 「연변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 『한국학연구』 30(2013), 338쪽.

18 《매일신보》, 1938년 1월 5일자.

는 법을 공포하여 국내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모색하고, 국민경제 붕괴의 환경을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영역에서 화교교육체계를 갖추었는데, 이는 이후의 화교교육정책 제정의 기본이 되었다.¹⁹ 그리고 1929년 3번째로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1차에서 3차까지 공포된 국적법은 모두 혈통주의에 근거한다는 것은 동일하였지만, 1929년의 국적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개인’을 기본으로 하여 부녀, 미성년자녀의 국적 취득과 상실이 남편, 부모와 다른 것도 허용하였다. 둘째, 복수국적 허용의 범위가 넓어졌다. 셋째, 국적을 회복하는 것은 쉽지만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다양한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²⁰

이후 중국 내전에서 모택동(毛澤東)이 승리하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화교정책을 시행했고, 화교를 중국 건설의 거대한 역량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일인 10월 1일 모택동은 중앙인민정부 주석의 신분으로 “교포들은 단결하여 조국 혁명에 호응하고 자기의 지위를 개선하자”고 화교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리고 중국인민정부협상회의 전날 통과된 ‘공동강령’ 제58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국외에 있는 화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힘을 다해야 하고 귀국화교와 화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²¹ 당시 새로운 국가를 수립한 중국에서는 과거 국민정부가 수립했던 국적법과 다른 별도의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1955년 4월 중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반둥(Bandung)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²² 이 논문의 연구시

19 李宣和, 「中国侨务政策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4), 18-21쪽.

20 楊韻平, *op. cit.*, pp. 93-95.

21 李宣和, *op. cit.*, pp. 25-26.

22 조원일,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이민사에 관한 소고: 신중국 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제105차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2017. 10), 190쪽.

기인 1945년 해방 당시 북한에 있던 화교들의 지위는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3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의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으며, 제9조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스스로 가입하거나 취득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은 취소된다고²³ 명시되어 이제 더 이상 중국 국민은 복수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²⁴

Ⅲ. 해방 후 북한의 정권 수립과 북조선화교연합회의 구성 및 활동

소련은 1945년 8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전쟁이 개전됨과 동시에 8월 9일 소련군 제1극동방면군 제25군이 함경북도 경흥지역에 도착했고, 16일 청진에 들어섰다. 그리고 24일에는 길주, 평양, 함흥에, 8월 말에는 북한 전 지역에 소련군이 주둔했다. 8월 24일 소련군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하였고, 8월 26일부터 소련군 본대 3,000여 명이 평양에 진주하기 시작했다.²⁵

북한의 정권 수립은 1949년 11월 19일 '북조선 행정 10국' 창설부터

23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法律出版社, 1980), pp. 3-4.

24 북한에서 국적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963년 10월 9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제1조 2항 공민의 범위는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제6조에는 외국인은 민족별 및 인종별에 관계없이 그의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편, 『국제법 및 해운법 참고서』(김일성종합대학, 1985), 2쪽.

25 박영실, 『8월 종파사건』(백년동안, 2015), 15-26쪽.

시작되었다. 1946년 2월 7-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예비대회'에서 김일성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²⁶ 1947년 2월 17-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평양에서는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및 각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북조선인민회의 규정에 관한 법령」 통과로 북조선인민회의가 구성되었다.²⁷ 그리고 1947년 2월 21일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인민회의를 조선의 최고정권기관으로 인정하여 주권을 북조선인민회의에 이양한다."고 한 것을 승인한 후, 최고집행기관인 북조선인민위원회 구성을 "미소공동위원회의 통일적 임시정부 수립까지"라는 전제하에 법적으로 승인하였다.²⁸

그 외 북한의 당 조직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10월 13일 70여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참석한 서북5도당원 및 열성자 연합대회에서 결성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당 조직의 시작이다. 그리고 1945년 12월 귀국한 연안독립동맹 인사들은 1946년 2월 16일 조선신민당으로 개칭하였는데, 동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였다.²⁹

당시 북한에 있던 화교들은 1945년 8월 소련이 북한에 들어오면서 이들 중 부유한 자들은 중국으로 귀국했고, 일부는 남한으로 이동했다. 1946년 10월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는 북한 화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화교들 간의 단결, 복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화교연합회를 결성하였는데,

26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선인, 2003), 265쪽.

27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5(국사편찬위원회, 1987), 147-148쪽.

28 김광운(2003), 앞의 책, 426쪽.

29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역사비평사, 1995), 168-184쪽.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북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면서 당시 북조선로동당원들의 구성은 양당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었지만, 중국인 정설송(丁雪松)이 북조선로동당 중앙교무위원회 비서장직을 맡았다. 이는 북한의 당 사업에 외국인이 참여한 사례를 보여준다.

이 화교연합회의 전신은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교상회(華僑商會)였다.³⁰ 1946년 12월 평양에 북조선화교연합회 중앙위원회가 수립될 당시 위원장은 왕정야(王靜野), 조직부장은 왕배임(王裴任), 선전부장은 팽광함(彭光涵)으로 이들은 중국공산당 간부였다.³¹ 한편 1946년 가을 평양에 있던 정설송이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 책임자 주리치(朱理治)에게 화교연합총회와 각 도 분회에서 필요한 간부 정황을 보고하자 주리치가 직접 대련(大連)을 방문했고, 이곳 간부 중 일부가 평양으로 가 화교연합총회의 선전부장, 평안북도 분회의 회장 등을 맡았다.³²

북조선화교연합회는 결성 초기 조선로동당 교무위원회와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의 이중지도를 받았다. 당시 화교연합회의 임무는 첫째, 화교에게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 교육 및 당시 조선의 정세, 조선로동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전, 둘째, 조선정부 정책 및 법령의 준수 및 북반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것, 셋째, “타도하자 장제스, 신중국을 건립하자”라는 중국공산당의 구호 및 국공내전의 정세에 대한 선전, 넷째, 조국에 대한 애국심 고양 및 동북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공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육하는 것, 다섯째, 조중 양국 인민 간 우의에 대한 선전, 화교와 조선 인민간의 우호 관계를 촉진시키고 또 그들 사이의 소원함을 해소하는 것, 여섯째, 화교 간 단결력과 우애 강화, 일곱째, 화교의 이익을 지키고 북한 정부에게 화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 등이었다.³³

화교연합회가 북한 내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단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했는데, 실제 화교들도 북한 내의 임시외국인공

30 楊昭全·孫玉梅, *op. cit.*, p. 321.

31 幕德政, *op. cit.*, p. 59.

32 丁雪松 口述, 楊德華 整理, 『第一位女大使丁雪松回忆录』, 亦凡公益图书馆(<http://www.shuku.net>), 검색일: 2018년 9월 5일.

33 楊昭全·孫玉梅, *op. cit.*, p. 321.

민증을 소유한 상태였다. 1946년 8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공민증은 교화소에 있거나 정신이상자 외에 18세 이상이면 사회성분, 빈부,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교부한다고 되어 있었다. 특히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외국공민증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는 일본인을 제외하고 임시공민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³⁴ 따라서 당시 북한 화교들과 북조선화교연합회는 조선인들 및 조선 각 사회단체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제시기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중국의 국공내전 당시 북한의 중공 지원은 커다란 역할을 했다. 우선 북한은 이 시기 중공의 후방기지로 북부지역 및 전략적 교통로를 제공했고, 또한 전략물자를 제공했다.³⁵ 그 외에도 중국공산당에서 파견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북조선화교연합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화교들의 사업을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북조선화교연합회가 진행한 사업은 첫째, 화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직접 교섭한 것과³⁶ 둘째, 문맹퇴치사업, 셋째, 자체적인 집회 조직 및 진행, 마지막으로 조국인 중국 해방을 지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공식적인 축하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우선 화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직접 교섭한 것을 살펴보자. 1947년 9월 3일 북조선화교연합총회 위원장과 화교대표들이 김일성을 방문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일제시기 조선의 항일유격대원들이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 그리고 중국인 반일부대 속에서 조중

34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5(국사편찬위원회, 1987), 823-825쪽.

35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중심, 2001), 59-69쪽.

36 이 부분은 III장인 '북조선 국가 수립과정에서의 화교들의 현지화'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양국 인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통해 일제와 공동 투쟁하였으며,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에 조선인민들을 파견하였고, 무기를 비롯한 전략물자도 지원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 정부가 화교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줬으며 화교들은 북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조선인민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³⁷ 그 외에도 1947년 7월 9일에는 빈곤한 화교들을 위해 200톤의 식량을 교부해달라고 김일성에게 요청하기도 했다.³⁸

북조선화교연합회는 교육사업의 일부로 성인에 대한 문맹퇴치사업도 진행하였다. 해방 직후 북한 화교들의 문맹률은 화교 총인구의 85%였다. 1946년 화교연합회 설립 후 주요공작 제1항은 문맹퇴치반의 조직이었다. 1949년 평양, 신의주에서 문맹퇴치사업이 진행되었고, 이 대상은 40세 이하의 청장년이었다. 1949년 11월 열린 화교연합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동(冬)기간인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매일 2시간씩 학습하는 반을 2개로 분리하는데, 문맹퇴치반은 정치반에 그 외에는 문화반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1949년 당시 문맹퇴치반에 참여한 인원은 총 화교수의 75% 이상이었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화교들이 조선어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화교연합회는 조선어 교육도 실시했는데, 15-45세의 문맹자와 중국어가 소학교 학생 수준이 되는 간부들에게 조선어 신문과 문건을 독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다.³⁹

북한에서 화교들이 주최한 집회로 1949년 6월 6일 중국 교사절 기념 보고대회가 평양시인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시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학수가 기념보고를 하고, 북조선화교연합총회 평양시위원장과 평양사범전문학교 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축사를 했다.⁴⁰ 이처럼

37 김일성, 『김일성전집』 6(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260-262쪽.

38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21號(1947년 7월 9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39 杨昭全·孙玉梅, *op. cit.*, pp. 317-320.

북조선화교연합회에는 공식적으로 김일성과 면담을 하고, 또한 중국의 행사를 북한 내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활동이다. 1949년 4월 30일 중국공산당의 남경 해방을 경축해 평양에서 경축대회가 열렸는데 당시 평양특별시 화교연합회 명의로 모택동 주석과 주덕(朱德)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해방군에게 축하 전보를 보냈다.⁴¹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10월 3일 화교들이 평양국립예술극장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화교들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검열상 김원봉, 상업상 장시우 등 그리고 소련대사관측 인사들도 참석하였다.⁴²

10월 3일에는 조선주재 동북상업대표단⁴³과 화교연합회 관계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와 중앙인민정부 수립을 경축하여 축하연을 개최했는데, 당시 참석자는 수상 김일성, 위원장 김두봉을 비롯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⁴⁴ 그 외에도 1948년 10월에는 『민주화교』를 창간하고, 화교연합총회가 화광서점(華光書店)을 설립한 후 1949년에는 민주화교사(民主華僑社)를 설립해 『北朝鮮華僑慶祝中華人民共和國誕生』, 『朝鮮概況』 등 다수의 서적을 출판했다.⁴⁵

40 《로동신문》, 1949년 6월 8일자.

41 《人民日報》, 1949년 5월 18일자.

42 《로동신문》, 1949년 10월 4일자.

43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는 1948년 후반 동북(행정위원회)상업대표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 1: 그의 삶』(형상사, 1992), 106쪽.

44 《로동신문》, 1949년 10월 5일자.

45 楊昭全·孫玉梅, *op. cit.*, p. 320.

IV. 북한 국가 수립과정에서의 화교들의 현지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후 북한 화교들의 북한에서의 지위는 거의 조선인들과 유사했다. 우선 북조선로동당 중앙교무위원회 비서장직을 맡았던 정설송의 사례와 위에 언급한 화교들의 집회 진행 등 일부 정치적 활동도 가능했다.⁴⁶ 또한 경제 및 교육 부분의 지위는 거의 조선인들과 유사했다. 11년간의 의무교육 무료, 의료비 무료, 주택 무료, 수도 전기료 및 식량의 공급과 보조 및 세금 면제 등의 사회적 복지혜택이 있었고,⁴⁷ 북조선화교연합회에서는 북한 중앙은행과도 거래를 하고 있었다.⁴⁸ 그리고 1947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북조선화교연합회는 중앙은행 총재에게 신규화폐 교환사업에 화교들도 참여할 것을 알리며, 신의주, 해주, 남포, 청진, 원산, 함흥 등 대도시에 이를 선전하기 위해 간부를 파견한다고 통보하였다.⁴⁹ 그 외에도 북한 거주 중국인들을 위해 평양방송국과 협상하여 1947년 3월부터 약 2개월 간 매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까지 30분간 중국어 방송을 진행하였다.⁵⁰

46 1950년대에도 화교들의 정치적 활동은 계속되었다. 1950년 3월 북조선화교연합 총회는 남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탄압하는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로동신문》, 1950년 3월 22일자),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4월에는 북한의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평화를 위한 호소문에 대해 화교들도 평화서명운동에 참여했다(《로동신문》, 1951년 4월 28일자).

47 王海龙, *op. cit.*, pp. 26-27.

48 「北朝鮮華聯總會總字第92號(1947년 11월 24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당시 북조선화교연합회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약 3개월간 연장해달라고 김일성에게 요청하였다.

49 「北朝鮮華聯總會總字第10號(1947년 12월 5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50 「北朝鮮華聯總會總字第〇5號(1947년 5월 24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화교들이 조선 인민들과 동등하게 생활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북조선 화교연합회의 역할은 지대했다. 화교연합회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 각 기관단체 등에 전문을 보내 북한에서 진행되는 사회, 경제적 사업에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북한 국가 수립과정에서 화교들의 현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로 나눌 수 있다.

1. 경제 분야

북한의 국가 수립과정에서의 화교들의 현지화 과정 중 경제 분야는 토지개혁, 식량배급, 소비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1) 토지개혁

북한에 있던 소련군이 토지개혁에 관한 구상을 시작한 것은 1945년 11월 말경이었다. 당시 민정사령관 로마넨코(Андрей Алексеевич Романенко)는 11월 30일자로 북한 지역에 한해 대지주의 토지를 몰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혁안을 상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로마넨코의 제의에 따라 1945년 12월 북한 각 지역에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농가실태를 조사하였다.⁵¹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자 가장 먼저 착수한 사업이 토지개혁이었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서」 제2조 2항에는 “최단기간 내에 일본 침략자 및 친일적 반동분자에게서 몰수한 토지와 삼림을 정리하며 적당한 방법으로 조선인 대지주와 삼림을 국유화시키며

5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선인, 2005), 328-329쪽.

반분소작제를 철폐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것으로서 토지개혁의 준비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되었다.⁵²

1946년 2월 23-27일 북조선농민연맹의 농민대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렸고, 다음날인 28일 본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 토지개혁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은 “긴급한 토지개혁 실시의 필요에 대한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성명을 시인하며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1946년 3월 5일 열린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회의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이름으로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⁵³ 이 법령에 따르면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여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 이용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토지개혁으로 북한에 있던 화교들도 같은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세칙’ 제3장 제8조에는 외국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토지소유자와 같이 토지법령을 적용하며, 외국인 토지도 「토지개혁법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경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여하는 경우 등에서는 조선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조선에 입적(入籍)하지 않고 주로 도시부근에서 채원(菜園)을 경영하는 외국인에게 소작 준토지를 몰수하여 인민위원회 재원으로 편입하고 인민위원회는 계약에 의하여 원소작인에게 경작권을 허여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⁴

이에 북한 화교들도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다. 평양화교연합총회에서는 평양 내 제4분회 회장에게 평양특별시 인민위원회에 건의

52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역사비평사, 1988), 135쪽.

53 국사편찬위원회(1987), 230-231쪽.

54 국사편찬위원회(1987), 233-237쪽.

해 화교들도 토지경작권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통지하고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라고 통보하였다.⁵⁵ 1947년 6월 27일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 책임자 주리치가 중국공산당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의주, 평양, 진남포 3개 지역에서 토지분배를 받았다고 한다.⁵⁶ 동년 8월 북조선화교총회는 김일성 위원장에게 평양, 진남포, 신의주, 해주 등 중요지역에서는 이미 토지개혁이 시작되었으나 기타 지역에 있는 화교 또는 미실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본회에서 화교토지개혁공작단을 조직하여 황해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에 파견해 2개월 반 동안(8월 10일-10월 25일, 75일간) 공작인원 14명을 파견할 것을 통보하였다.⁵⁷ 화교들에 대한 토지분배는 북한 정부가 이들을 조선 인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식량배급

1946년 2월 2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북한 특히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일대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를 작성하여 적당한 식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3월 1일부터 배급할 식량배급량을 결정하였다. 식량 배급기준은 4부류로 나누었는데, 첫째, 힘든 노동, 위험한 노동 종사자, 둘째, 기타 노동자, 셋째, 사무원, 넷째, 노동자 및 사무원의 가족들로 나누어 1인당 g을 결정하였다. 조항 중에는 식량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곡물을 소, 말, 개 등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곡물을 원료로 한 떡, 엿, 과자 등의 제조를 금지했다. 그 외에 식량이 필요한 도에서는 북한 이외 지역에서 곡물을 매수(買收) 또는 다른 상품과

55 「平華聯總字第224號(1947년 4월 23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56 송우창(2015), 앞의 글, 214쪽.

57 「北朝鮮華聯總會總字第32號(1947년 8월 6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당시 이들에 대한 식량 배급도 함께 신청하였다.

교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지주 및 농민은 이미 공포한 할당량에 준하여 미납한 것을 성출할 것을 만약 지주 및 농민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일 내지 5일 이내로 검찰소에서 조사하여 재판에 회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결정하였다.⁵⁸ 이 성출작업에는 면인민위원회, 보안서, 농민조합, 노동조합 등의 대표들이 '성출완수돌격대'를 조직하여 성출 할당량을 기한 내에 완납하도록 했다.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배급이 실시되면서 화교들도 동등하게 배급을 받았다. 당시 북조선화교연합총회에서는 각 도·시·군 화교연합회 위원장들에게 식량배급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다. 화교들도 북한 주민에 대한 배급 규정과 동일한 양을 배급받을 수 있고 또한 화교 지주에게는 배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배급방법은 각지 연합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지주와 빈자를 가려 정확한 명단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⁹ 그리고 1947년 6월 24일 북조선화교연합총회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양정부장에게 평남도 내 화교연합회 직원들의 직장에 양곡배급을 신청하면서 직원 명단을 제출하였다.⁶⁰ 9월 17일에는 북조선화교중학교 교원 및 각 도·시·군·면 소학교에 대한 식량 배급을 북한 각 학교에 동등하게 취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⁶¹ 당시 학교에서 필요한 중국인 교사는 북한 내에서 찾을 수 없어 중국에서 초빙해오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보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중국인 교원명단을 첨부하면서 식량배급을 신청하기도 했다.⁶²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 내용에 식량이 필요한 도에서는 북한 이외 지역에서 곡물을 매수(買收) 또는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58 국사편찬위원회(1987), 315-316쪽.

59 「平華聯總字第〇號(1947년 5월 3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60 「北朝華會總字第16號(1947년 6월 24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61 「北朝華聯總字第60號(1947년 9월 17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62 「華僑聯合會委員長(1947년 10월 5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북조선화교연합회에서는 김일성에게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방법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화교의 식량 중 옥수수 150톤(좁쌀 88톤은 옥수수 150톤으로 교환)을 남포로 이동하여 대련에서 면사 110건으로 교환하여, 이 면사를 다시 남포항에 입항한 후 조선을 경유하여 북만으로 유출하여 식량 300톤으로 교환해 북한에 다시 들여오면 조선의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⁶³ 북조선화교연합회가 북한 정부의 「식량대책에 대한 결정서」를 따라 화교들 중에 지주와 빈자를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과 북한 내의 식량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제시는 이들이 북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판단 하에 나온 행동이었다.

3) 소비조합

북한은 해방 초기 일반시장 만으로는 물자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분산되어 있던 협동조합과 공리사(共利社)들을 1946년 5월 20일 전국적인 조직인 '북조선소비조합'으로 통일해 개편했다. 소비조합의 설립 목적은 규약 제2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데 "간상배의 중간착취를 배제하고 근로인민들에게 생활필수품과 일상생산물품을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창립당시 106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던 소비조합은 1947년 말에는 조합원 총수 488만 436명으로 대규모 조직이 되었다.⁶⁴ 1947년 3월 3일자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 결정서인 「소비조합 상점사업에 대하여」와 「소비조합 량곡소매에 대하여」는 소비조합을 돕는 사업을 각 도·시·군 당부와 당조 책임자가 담당하도록 언급하였다.⁶⁵

63 「北朝華聯總字第44號(1947년 8월 10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64 김성보(1988), 앞의 책, 254쪽.

65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30(국사편찬위원회, 1988), 139-143쪽.

당시 화교들의 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북조선화교총회에서서는 김일성에게 4만여 명의 화교들이 생활이 곤란하기 때문에 북조선소비조합 하에 북조선소비조합 화교상점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이에 첫째, 북조선소비조합 영도 하에 각지 화교상점을 설치할 것, 둘째, 평양특별시 화교상점은 북조선소비조합 직속으로 하고 각지에는 각 그 해당도 소비조합에 귀속하여 그의 영도를 받을 것, 셋째, 화교상점의 종지(宗旨), 즉 사업 및 경영방법은 북한 정부의 법령 및 북조선소비조합 규정에 의거할 것, 넷째, 각지에 화교상점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북조선화교연합회총회를 경유하여 북조선소비조합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후 설치할 것, 다섯째, 화교인구가 비교적 소수인 지방에 있어서는 일반 화교들로 하여금 각 지역 소비조합에 가입할 것을 허가하는 동시에 조선인민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할 것, 여섯째, 먼저 평양특별시, 신의주시 2곳에 설치하고 기타 지방에서는 차후에 신청하여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전문을 보냈다.⁶⁶ 하지만 화교들의 소비조합 가입률이 저조하자 1947년 12월에는 북조선소비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북조선 시·도,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화교들 중 소비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화교주민 인구표를 송부하니 선전을 통해 가입을 독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⁶⁷ 화교들의 소비조합 가입 문제는 북한사회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기

66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7號(1947년 5월 13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당시 화교들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많았다. 따라서 화교연합총회에서는 소비조합 중앙위원회 위원장 외에도 평안북도 화교연합회 위원장에게 덕천직업동맹 위원장에게 탄광공인 모집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실업공인들 다수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귀국을 선택하기 때문에 덕천직업동맹 위원장에게 귀 위원회에서 공인 100명 이상을 덕천탄광공작에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도록 했다.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7號(1947년 10월 8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67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105號(1947년 12월 22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북조선화교연합회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선전했다.

2. 교육 분야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은 화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12년 남경 임시 정부가 제정한 교무정책에는 교육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서만 조선에서 생활하는 화교들이 현지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조국 중국에 대한 애착을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조선에서는 1902년 30명의 학생들만으로 설립된 인천화교학당의 창건이 화교학교의 시작이었고 이 학교는 1912년에 중화학교(中華學校)로 개명하였다. 1930년대 화교소학교는 모두 8곳으로 한성, 인천, 원산, 신의주, 해주, 진남포 각 1곳, 평양이 2곳이었다. 경비는 학교의 재단이사회에서 기부하고, 자금을 모집했다.⁶⁸ 조선 화교소학교의 창설자는 각지 화교상회였고, 이들은 학교의 관리자이기도 했다. 실례로 평양화교소학교는 평양화교상회가 창립했고, 1932년 설립된 진남포화교소학교는 신의주화교상회 내에 설립되었다. 1915년 창립된 신의주 화교소학교는 신의주화교상회 내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남경 국민정부의 교무위원회에서 월 60원을 보조해줬고, 당지 화교사회 인사들이 매월 30원을 기부해서 운영되었다. 이 당시 조선에 설립된 화교학교 경비의 출처는 주로 중국 남경정부 교무위원회와 당지 영사관의 보조금 그리고 그 지역 화교들의 기부금, 학생들의 납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⁶⁹

하지만 해방 후 북한 화교들의 교육사업은 북한 정부의 지원 하에 발전하

68 譚天星·沈立新 撰, 『海外华侨华人文化志』(上海人民出版社, 1998), p. 70.

69 杨昭全·孙玉梅, *op. cit.* pp. 288-294.

였다. 우선 기존에 있던 북한 화교 소학교들의 재건축에 필요한 물품을 북한 정부가 제공하였다. 북조선화교연합총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에게 화교소학교의 교사(校舍)와 학교에서 이용할 차량 2대와 함께 보조금 30만원을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숙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⁷⁰ 그 외 여름방학 동안 각지 화교소학교 전체 직원, 교원 50명을 35일간 훈련하기 위한 식량 및 일용품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⁷¹

화교소학교들만 있던 북한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1947년 7월 14일 북조선화교연합총회는 김일성에게 북조선화교중학교 설립 및 교사훈련반 개설문제를 언급하고, 이들의 경비 및 식량배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⁷² 그리고 직접 북조선화교중학교 건축 보조금을 요청했다.⁷³ 동년 11월 25일 최초로 북한에서 중국인 중학교 개교식이 열렸다.⁷⁴ 당시 교장은 중국에서 초청한 교육가 최승지(崔承志), 교육자는 중국공산당이 파견한 간부 주자소(朱子蘇)와 조령덕(趙令德)이 담당했다.⁷⁵

1948년 당시 북한에 있던 화교 학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화교인민학교는 54교가 설립되어 4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화교중학교는 1개가 설립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학교들의 교원들도 북한 각 학교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⁷⁶

70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9號(1947년 6월 13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71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27號(1947년 7월 21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72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22號(1947년 7월 10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73 「北朝鮮華僑聯合總會總字第35號(1947년 8월 8일)」,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74 《로동신문》, 1947년 11월 27일자.

75 幕德政, *op. cit.*, p. 60.

평양특별시 화교연합회가 조사한 향후 화교학교가 진행해야 하는 대외 관계는 4가지였다. 첫째, 북한 정부와의 관계, 둘째 화교연합회(이하 화련회)와의 관계, 셋째, 학교 이사회와의 관계, 넷째, 가장(家長) 및 군중과의 관계였다.

첫째, 북한 정부와의 관계는 학교와 북한 정부는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하고, 화련회를 통해 직접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화련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는 화련회에서 관리하고, 교원의 숙박과 생활은 화련회에서 하며 학습, 공작 등은 항상 협조해야 하고 각 학습, 공연, 회의 등 이외의 시간은 줄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문제 등의 해결도 화련회에서 담당하는 것이었다. 셋째, 학교 이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학교 이사회가 학교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은 학교 이사회에서 보조한다는 것이었다. 넷째, 가장 및 군중과의 관계에서 학교는 겨울방학 외에는 가장을 방문하는 것과 군중과 접촉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호간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화련회는 평양특별시 화교소학교 입학 및 실학통계 비교표를 작성하였고, 교수(教授) 시간의 과목을 확인하였다. 교과목은 산수, 말하기, 번역(常訳), 음악, 체조, 노작(勞作)⁷⁷, 습자, 이어말하기(連句), 그림이었다. 또한 평양특별시에서도 문맹조사통계표를 제시했는데, 문맹자 총수와 입학자 수, 미입학자 수 등을 비교했다.⁷⁸

1949년 초 북한 내 각 도 화교연합회에서는 교육현황 및 문맹에 대해 조사했고, 지역마다 각종 행사를 실시했는데 함경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조중 아동간의 모임, 둘째, 가장(家長)과의 간담회, 셋째, 가정방문으로

76 《민주조선》, 1948년 7월 2일자.

77 옛날, 소학교 과목의 하나로 가사(家事)·농사·공예 등을 가르친다.

78 「平壤特別市華僑聯合會教育填寫表」, NARA, RG 242, Korean-Language Publications and Records Captured in Pyongyang, Box. 12.

모임을 진행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조중 아동간의 모임은 청진시, 나진시, 나남시, 회녕군, 옹기, 무산군에서 각 1차례씩 진행했고, 참여한 아동들의 총 숫자는 1,930명이었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가장들이 모두 만족했고, 조중 학생의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4·4아동절⁷⁹ 기념모임으로 학생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사업인 가장 간담회는 청진시 등 총 10개 지역, 10개 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총 21차례에 걸쳐 869명이 참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은 11곳에서 진행되었다. 함경북도의 사회교육 상황 분석은 학생 수, 교원 수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당시 교육 참가자들의 연령은 1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조사는 당시 화련회가 아동교육뿐만 아니라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과정에도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함경북도 교원의 교육공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화교중학교의 경우에 교육이 정규화되지 못하고, 교원의 수준도 미달인 상태로 평가하였다. 또한 교과서가 부족하고, 각 지역마다 다른 교육방법의 문제점, 각 학교 학생복의 일률적 착용의 필요성을 주지하였다.⁸⁰

북한에서 화교들에 대한 교육 방침이 변화된 계기는 1949년 초 중국공산당 동북행정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여기서 북한 각지의 화교 중·소학교를 조선로동당 지도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관리하도록 했는데, 당시 이 결정은 화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화교의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1949년 3월 북한 정부는 중국과 북조선화교연합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3월 내각회의에서 「중국인학교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1949년 4월 1일자로 북한 각지 화교연합회 관리하의 화교학교들

79 중국의 어린이날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6월 1일로 변경되었다.

80 「咸北道敎員敎育工作缺點總結, 1949年 2月 25日」, NARA, RG 242, Korean Language Publications and Records Captured in Pyongyang, Box. 12.

을 북한 정부 교육성(부)에서 접수하여 관리하는 것이었다. 당시 학생들의 기숙사, 식비는 매달 5원이었고 학비와 의료비는 면제로 이것은 조선인들과 같은 조건이었다.⁸¹

1949년 3월 11일 발표된 중국인학교 관리에 대한 결정서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² 해방 전에는 북한에 화교들의 학교가 약 30개소에 1,000여 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1949년부터는 87개소의 초등학교에서 약 6,00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중학교도 설립하였다. 그러나 학교 관리와 교육교양사업 내용에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중국인학교 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중국 동북행정위원회와 북조선화교연합총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의 7개 항을 결정하였다.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49년 4월 1일부터 공화국 38선 이북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학교를 북조선화교연합총회로부터 인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성에서 이를 관리한다. 둘째, 평양시 및 신의주시의 중국인학교 교사문제를 3월 20일까지 보장할 것을 평양시 및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1949년 7월 말일까지 중국인학교 교사 및 내용 설비를 교육상 지장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교육상, 도시경영상, 각 도(평양시)시군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자강도조직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책임진다. 셋째, 중국인학교를 관리하며 지도·검열하기 위하여 교육성 보통교육국 내에 정원 5명으로 하는 중국인교육부를 설치하며, 평양시·평안남도·자강도·황해도·함경남도(강원도까지 관할한다) 및 함경북도 교육부에 중국인 교육을 전담하는 시학(視學) 1명씩을 증원 배치하는 동시에 교수요강, 교과

81 幕德政, *op. cit.*, p. 61.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30호,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 (1949년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제4호, 1949년 3월 31일』, NARA, RG 242,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II: Series.

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성 편찬관리국 내에 편수 5명을 증원한다. 넷째, 중국인학교 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인중학교에 중국인교원 양성소를 설치하며, 현직 중국인 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교육사업을 1949년 8월까지 실시할 것을 교육상이 책임진다. 다섯째, 중국인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 및 교수요강을 제정하며, 교과서대책을 수립, 실시할 것을 교육상이 책임진다. 여섯째, 중국인 교원 및 행정일군에게 조선인과 동일한 봉급·식량 및 생활필수품을 급여 또는 배급할 것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교육상, 상업상, 재정상 및 내각 양정국장이 각각 책임진다. 일곱째, 중국인학교 관리에 소요되는 별지 예산안(생략)을 승인하는 동시에 이를 추가 지출할 것을 재정상이 책임진다.

이 내용을 보면 북한에 있는 화교 학교들에 대한 북조선화교연합회의 영향력은 감소했으며 화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중 아동간의 모임, 가정(家長)과의 간담회, 가정방문 등은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화교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이들을 북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을 의미했다.

V. 맺음말

1948년 북조선 임시헌법 제정을 위해 4월 28일 열린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당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위원장 김두봉은 헌법초안 보고 중 소수민족 조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현재 만주에는 우리 동포가 백여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헌법이 국내의 소수민족에게 동등권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의

권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⁸³ 이후 이 내용은 헌법 제정 과정에 포함되어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 정식으로 채택될 때 제2장 국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국민은 성별, 민족별, 신앙, 기술,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3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권을 가진 소수민족은 조선민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자기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시점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화교들 외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 화교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 모택동은 화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반도 해방 직후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의 수는 6만여 명이었고, 이들이 처음에 모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중화민국이었다. 하지만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동북지역과 거리가 인접했기 때문에 화교들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공산당이 강해졌고, 특히 북조선화교연합회의 구성은 화교들의 성향을 변화시켰다. 북조선화교연합회는 화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 실시, 북한 정부의 정책 및 법령 준수 지시, 중국공산당의 정책 선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북한 정부에게는 이들이 조선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에서 화교들은 거의 조선인들과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간단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화교연합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 각 기관에 전문을 보내 북한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사회, 경제적

83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 회의」, 제1일 1948년 4월 28일.

사업에서 화교들에게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북한 정부도 이들을 사회의 일원이라는 판단 하에 정책을 집행했다. 조선 화교들의 북한 사회 현지화과정은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 경제 분야는 토지개혁, 식량배급, 소비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분배는 북한 정부가 화교들을 조선 인민들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식량배급과 소비조합 가입은 북한 사회에서 화교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1949년 이후 화교들에 대한 교육관련 체제가 북한 정부의 관리 하에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화교 학생들도 북한 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결국 화교들이 북한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1947년 8월 15일 8·15 경축 2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전체 화교의 명의로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에는 조선의 민주정부가 시행한 토지개혁을 통해 화교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경제생활을 보장받았으며, 자유선거를 통해 ‘화교연합회’를 조직하여 공회, 농회, 부녀회 등 민주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이들의 삶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 면에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⁸⁴

하지만 화교들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는 없다. 예를 들어 토지개혁을 통해 총 화교수의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토지를 소유했는지 등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인 북조선화교연합회가 김일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 등에 보낸 각종 문건에 대한 정확한 실행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북조선화교연합회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주민들 간의 갈등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추후 연구과제로 진행할 것이다.

84 「발신: 北朝鮮全體華僑, 1947. 8. 15」,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 5.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7.
_____, 『북한관계사료집』 30.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8.
- 김광운, 『북한정치사 연구』 1. 서울: 선인, 2003.
- 김동하,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서울: 마인드랩, 2017.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1988.
- 김일성, 『김일성전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김일성종합대학 편, 『국제법 및 해운법 참고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1985.
-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서울: 선인, 2012.
_____, 『8월 종파사건』. 서울: 백년동안, 2015.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5.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5.
_____,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1.
- 정설송 엮음, 『(중국인민해방군가의) 작곡가 정률성 1 그의 삶』. 서울: 형상사, 1992.

『1947年度 北朝鮮華僑聯合總會 發出公文底』.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北京: 法律出版社, 1980.

楊昭全·孫玉梅 著,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楊韻平, 『汪政權與朝鮮華僑(1940-1945): 東亞秩序之一研究』. 臺北: 稻鄉出版社, 2007.

譚天星·沈立新 撰, 『海外華僑華人文化志』.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2. 논문

- 송우창, 「북한의 산업집단화와 북한화교(1954-1966)」. 송승석·이정희 편저, 『동남 아화교와 동북아화교 마주보기』, 서울: 학고당, 2015, 206-214쪽.
- 이승엽,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화교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혁과 통일·평화의 상상력』, 북한연구학회 정치 추계학술회의, 2012.
- 李宣和, 「中國僑務政策之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옥련, 「연변지역의 귀국화교사회와 북한화교사회의 상관관계 및 역사성」. 『한국학연구』 30, 2013, 325-355쪽.

조원일, 「동남아시아 지역 화교 이민사에 관한 소고: 신중국 수립 이후를 중심으로」. 제105차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 10.

쩌르치즈스키 표도르(이휘성), 「북한 (華僑)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Tertitskiy Fyodor, 「북한 화교 교육제도의 역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3, 2017, 5-21쪽.

Charles Kraus, "Bridging East Asia's Revolutions: The Overseas Chinese in North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 11, No 2, 2014, pp. 37-70.

幕德政, 「朝鮮華僑教育의 歷史回顧」. 『華僑華人歷史研究』, 2001年 12月 第4期, pp. 59-61.

孙玉梅, 「朝鮮華僑在抗美援朝戰爭中的貢獻」. 『社會科學戰線』, 1992年 1期, pp. 221-223.

王海龍, 「朝鮮華僑的社會變遷」. 『世界知識』, 2012年 7期, pp. 26-27.

朱慧玲, 「東北亞華僑社會的現狀及其未來」. 『華僑華人歷史研究』, 1997年 1期, pp. 51-57.

3. 사이트

丁雪松 口述, 杨德华 整理, 『第一位女大使丁雪松回忆录』. 亦凡公益图书馆(<http://www.shuku.net>), 검색일: 2018년 9월 5일.

4. 신문기사

《매일신보》, 1938년 1월 5일자.

《로동신문》, 1947년 11월 27일자.

《로동신문》, 1949년 6월 8일자.

《로동신문》, 1949년 10월 4일자.

《로동신문》, 1949년 10월 5일자.

《로동신문》, 1950년 3월 22일자.

《로동신문》, 1951년 4월 28일자.

《민주조선》, 1948년 7월 2일자.

5. 그 외 자료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 회의」. 제1일 1948년 4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30호,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 (1949년 3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제4호, 1949년 3월 31일』, NARA, RG 242, Captured Korean Documents, Doc No. SA 2007 III: Series.

NARA, RG 242, Korean-Language Publications and Records Captured in Pyongyang, Box. 12.

국문초록

한반도 해방 직후 북한에 거주하던 화교의 수는 6만여 명이었고, 국공내전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초기에 화교들이 모국으로 생각했던 것은 중화민국이었다. 하지만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동북지역과 거리가 인접했던 이유로 화교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특히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수립과 북조선화교연합회의 구성은 화교들의 성향을 변화시켰다. 북조선화교연합회는 화교들에게 사상교육, 북한 정부의 정책 선전 등을 진행했고, 북한 정부에게는 화교들이 조선인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화교연합회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과 북조선인민위원회 산하 각 기관에 전문을 보내 북한에서 진행되는 경제적, 사회적 사업에서 화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북한 정부도 이들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판단 하에 정책을 집행했다. 결국 화교들은 북한 정부가 진행하는 경제 분야와 교육 분야 등에서 거의 조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투고일 2019. 3. 20.

심사일 2019. 5. 2.

게재 확정일 2019. 8. 13.

주제어(keyword) 북한 화교(overseas Chinese in the North Korea), 북조선인민위원회(the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 북조선화교연합회(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국공내전(Chinese civil war)

Abstracts

Settlement Process of Overseas Chinese in the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Park, Young-sil

There were about 60,000 overseas Chinese living in the North Ko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Moreover, the overseas Chinese in the North Korea thought their mother country w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the beginning during the Chinese civil war. However, the Soviet army resided in the North Korea and Chinese communist party enhanced its influence on the overseas Chinese because the North Korea was close to the northeastern region of China.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 and 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changed the tendency of overseas Chinese.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implemented the ideology education and political propaganda of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overseas Chinese and requested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give the same rights as the North Korean to the overseas Chinese. The North Korea Overseas Chinese Federation also asked the North Korean authority to allow the overseas Chines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nd social projects implemented in the North Korea by sending the messages to each relevant organization under the North Korea People's Committee as well as its chairman Kim il-sung. The North Korean authority also executed the policies under the judgment that overseas Chinese were the members in its community. After all, the overseas Chinese could secure almost the same treatment as the North Korean in the projects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y including the field of economic and the field of education.